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신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
-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 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

3. 주요내용

- 15통 증설 (안 별표7, 별표13, 별표14, 별표23, 별표24, 별표27)
 - 통·리 : 572개 통리(통 405, 리 167) ⇒ 587개 통리(통 420, 리 167)
- 194개반 증설, 2개반 폐지(안 별표1, 별표2, 별표7, 별표13, 별표14, 별표22, 별표23, 별표24, 별표25, 별표27)
 - 반 : 4,023개반 ⇒ 4,215개반(192개반 증설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 및 제6항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·폐합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통리는 572개 통리에서 도량동 1개통, 선주원남동 2개통, 상모사곡동 3개통, 임오동 2개통, 양포동 7개통 등 15개통의 증설로 587개 통리로 조정하였고,
- 반은 4,023개 반에서 선산읍 증2, 고아읍 증15, 산동면 증1, 도량동 증11, 선주원남동 증26, 광평동 증17, 상모사곡동 증32, 임오동 증29, 인동동 증2, 양포동 증59 등 194개반을 증설하면서 상모사곡동 2개반을 감하여 총 192개반이 증가된 4,215개반으로 조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대부분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- 통리반이 생활권과 일정기준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었는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